

의안번호	2203014
의 퇴 인	김남희의원
회 답 일	2024. 9. 19.
추 계 번호	24C2860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정의) 및 안 제38조(자 립지원)	○ 자립지원아동등을 새로이 정의함(안 제3조) <가목> -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사람 및 그 보호조치가 종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나목>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- 「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-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,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<다목> -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- 18세에 달하기 전에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<라목> - 나목에 열거된 시설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○ 자립지원아동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,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,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, 자립에 간한 실태조사 및 연구,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¹⁾으로 정하는 사항(이하 “자립지원 조치사항”이라 함)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(안 제38조)	의무규정

2	안 제38조의2(자립지원 실태조사)	○ 자립지원아동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	
3	안 제39조의2(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)	○ 자립지원아동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정의) 및 안 제38조(자립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8조의2(자립지원 실태조사)	
3	안 제39조의2(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)	

2. 상세 사유

□ 자립 지원 대상 확대(안 제3조 및 안 제38조)

- 개정안에 따라 자립지원아동등에 대하여 자립지원 조치사항 시행을 의무화

1) 제38조(자립지원)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아동복지시설(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)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

하는 경우 기존 대상 외 자립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그에 따른 재정소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

- 다만, 안 제3조제12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개별법상 지원 근거 여부와 기존 지원 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안대로 자립지원 조치사항 일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,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함

－ 참고로 안 제3조제12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운영 근거가 되는 개별법상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안 제3조제12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현황

지원대상	지원기준	경제 지원	사후관리 등 지원	법적근거
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 시설	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중 조건*을 충족한 자 * (아동)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190점(중증장애인 거주시설) / 110점(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등) ※ 현 「장애인복지법」 체계상 연령에 따른 별도 지원체계 마련 한계	장애수당 * 복지시설 퇴소 청년 특화 지원제도 부재	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기반 자립지원제도 실시	「장애인복지법」 제53조·제54조 「장애인복지법」 제85조(장애인복지시설) * 2025.7.3.시행
2)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	청소년쉼터·청소년자립지원생활관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고(직전 6개월은 연속보호) 18세 이후 퇴소한 자	자립지원 수당 (월 40만원, 5년)	자립생활관 기반 사례관리, 자립지원 실시(6개월)	▲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32조의3
3) 「성폭력방지법」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	19세 미만으로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, 퇴소 당시 나이가 19세에 도달한 자 ※ 취업 또는 대학 입학 등으로 조기퇴소 하는 경우, 18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 가능	자립지원금 (500만원, 1회) 자립지원수당 (월 50만원, 5년)	미실시	「성폭력방지법 및 동법시행령」 제5조(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)

지원대상	지원기준	경제 지원	사후관리 등 지원	법적근거
4) 「성매매피해자 보호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시설	(시설퇴소기준) 19세 미만까지 시설 이용 가능,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※ 입소자 희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지원시설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기간 연장	지원제도 없음	미 실시	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
5)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	(요양시설)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 (재활시설)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사회 적응 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* 아동·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: 아동·청소년법 연령기준에 의해 실시	지원제도 없음 * 정신질환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지원 가능	미 실시	「정신건강복지법」상 자립지원 규정 부재
6) 「노숙인복지법」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,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	「노숙인복지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숙인*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자 (아동 입소 여부) 불가능 * 노숙인 자녀 등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으나, 법적 지원 미대상 ※ 노숙인 자녀 중 18세 미만인 경우 기존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에 의해 지원대상	해당사항 없음 (아동입소 불가능)	해당사항 없음 (아동입소 불가능)	해당사항 없음 (아동입소 불가능)

자료: 보건복지부

□ 자립지원아동등에 대한 자립지원 실태조사(안 제38조의2) 및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(안 제39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자립지원아동등에 대하여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태조사 대상 확대로 인하여 조사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, 자립지원전담기관 추가 설치 또는 업무량 증가에 따라 설치·운영 비용 또는 지원 인력 확대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예상할 수 있겠으

나, 현시점에서는 실태조사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,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수 등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